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8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를 통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방세를 감면 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나.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하기 위해 부칙 제2조와 같이 적용례를 추가함.

3. 자치법규안 : 붙임과 같음

4.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법 제3조 및 감면조례 표준안
【경상북도 세정과-8585(2010. 6. 16)】

나. 입법예고('10.7.30 ~ '10.8.20)결과 : 의견 없음

다. 기타참고사항 :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 성주군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28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 성주군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